

은행은 본인에게 이 근보증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##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

수입인지

년 월 일

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앞

본인 \_\_\_\_\_(인)

주 소 \_\_\_\_\_

본인이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### 제 1 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

-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(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의 매입·매출채권의 관리 회수·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·전산정보처리·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.
-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 2 항에 의한 거래범위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.

### 제 2 조 유사계약의 협의

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

### 제 3 조 거래조건

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. (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에 "V" 표시합니다.)

여신과목	외상매출채권매입(팩토링)	거래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거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거래	
여신(한도)금액	금 원 (할부채권: 금 원)			
여신개시일	년 월 일	여신기간 만료일	년 월 일	
수수료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선택)	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%	지연배상금률 (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3 조 제 5 항 적용)	최고 연
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선택)	( %)		%
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	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
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전 지급 시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위 여신거래기간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, 그 대전의 지급시기는 제 8 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		
상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		
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최고에는 매출채권의 양도시에,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계산 최종일에 매 ( )개월 단위로 선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		

#### 제 4 조 수수료

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 6 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정한 수수료율 및 수수료 지급시기에 은행이 따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,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 3 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계산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

#### 제 5 조 감액·정지

①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 3 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,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
  - 一.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  - 二.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- 三. 은행의 지급여력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
  - 四.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
2.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 사유
  - 一.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(2 단계 이상 등)한 경우
  - 二.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

- 三.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
  - 四. 신문,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
  - 五.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
  - 六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七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 1 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분은 곧 반환받거나 환매하고,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.
- ③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·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## 제 6 조 매출채권의 양도

- ① 본인은 제 1 조 제 3 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매출채권(어음채권 제외)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.
- ③ 제 2 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④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 1 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7 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

- ① 은행은 제 6 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. 그러나 제 6 조 제 3 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.

## 제 8 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

본인은 은행이 제 6 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.

## 제 9 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

은행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을 지급받습니다.

## 제 10 조 매출채권의 환매

- ① 은행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·품질·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,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.
- ② 은행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.
- ④ 본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⑤ 제 1 항 제 2 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.

## 제 11 조 매출채권대출

- ① 제 8 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 2 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제 1 항에 의한 대출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. (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에 “V” 표시합니다)

여신과목	외상매출채권매입(팩토링)			
대출금액	제 3 조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하되,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총액의 ( )%이내로 합니다.			
대출기간	제 8 조에 의한 평균만기일까지로 하되, 최장 ( )개월 이내로 합니다.			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선택)	대출만료일까지 연 %	지연배상금률 (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3 조 제 5 항 적용)	최고 연 ( )%
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선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 +( )%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+( )%		
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	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
대출실행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		
상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대전 및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		

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..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(    )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(    )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   )
---------------	---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준금리는 통화별로 달라질 수 있고, 사전에 은행과 상호 합의된 금리를 말합니다.

③ 본인은 제 2 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# 제 12 조 대출금의 변제 등

① 본인이 제 11 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 10 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 대하여 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 10 조 제 3 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.

② 제 19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.

③ 본인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11 조 제 2 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# 제 13 조 통지의무

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.

### 제 14 조 양도 질권설정의 금지

본인은 은행의사전의 서면승낙없이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.

### 제 15 조 담보권의 이전

본인은 은행의 청구있는 때에는 곧 제 6 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족 있는 모든 물적 인적 담보(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)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밝기로 합니다.

### 제 16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

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

구분	20	20	20	20	20
부채비율	%	%	%	%	%
자기자본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
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
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·임대
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
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
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2. 지배주주의 출자
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
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

### 제 17 조 자료의 제출 등

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1. 매분기: 부가가치세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2. 매반기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3. 매 년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 개년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 ISO, 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4. 수 시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
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1.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
2.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
3.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

### 제 18 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

①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3 조(이자등과 지연배상금)·제 4 조(비용의 부담)·제 6 조(담보)·제 7 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·제 10 조(은행으로부터의 상계)등·제 11 조(채무자로부터의 상계)·제 12 조(어음의 제시·교부)·제 13 조(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)·제 14 조(채무자의 상계총당지정)·제 15 조(위험부담·면책조항)·제 16

조(신고사항과 그 변경등)·제 17 조(자료의 성실작성의무)·제 18 조(통지의 효력)·제 19 조(회보와 조사)·제 20 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 등)·제 23 조(이행장소·준거법)·제 24 조(약관·부속약관 변경)·제 25 조(관할법원의 합의)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.

② 제 1 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상 채무자는 본인, 제 7 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.

### 제 19 조 협의사항

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.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--

(인)
-----